

학생상벌 규정

제정 1979.03.01.

개정 1991.02.11.

개정 1996.12.26.

개정 2009.02.06.

개정 2012.02.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43조, 44조에 의거 학생상벌에 관한 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) 학생의 상과 벌은 이 규정에 의하며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장 상벌위원회

제3조(상벌위원회) 상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상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둔다.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본 대학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며 학사지원팀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.

제5조(회의)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특상, 감면) ① 총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상할 수 있으며 징계에 관한 사항은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.

② 총장은 징계 대상자나 징계중인 자가 개전의 태도가 현저한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3장 포상

제7조(포상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.

- ① 학업상 :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
- ② 근면상 : 근면, 성실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
- ③ 공로상 : 국가나 대학에 공로가 있는 자
- ④ 문화상 : 창의적 연구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
- ⑤ 체육상 : 체육활동으로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

- ⑥ 모범상 : 선행으로 타인의 모범이 된 자

제4장 징계

제8조(근신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근신(7일 이하)에 처한다.

- ① 복장이나 용모가 불량한 자
- ② 수업 분위기를 해친 자
- ③ 학내 환경을 더럽힌 자
- ④ 광고물을 허가하지 않은 곳에 붙인 자
- ⑤ 기타 학생으로서 불미한 행위를 한 자

제9조(유기정학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기정학(15일 이내)에 처한다.

-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
- ② 타인에게 협박 또는 폭행한 자
- ③ 타인의 금품을 훔친 자
- ④ 학내에서 음주하여 소란을 피운 자
- ⑤ 학내에서 도박을 한 자
- ⑥ 시험 중 부정행위 자
- ⑦ 허가없이 광고물을 붙이거나 배포한 자 또는 훼손한 자
- ⑧ 교직원에게 불순한 자
- ⑨ 학내에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시위하는 자
- ⑩ 제8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자

제10조(무기정학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무기정학에 처한다.

- ① 타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자
- ② 강의를 비방하거나, 수업 진행을 어렵게 한 자
- ③ 시험 중 대리시험을 본 자와 보게한 자,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
- ④ 고의로 학내 기물이나 시설을 파괴한 자 또는 이를 외부에 반출한 자
- ⑤ 허가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
- ⑥ 교직원을 비방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
- ⑦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- ⑧ 제9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자
- ⑨ 학생회칙 및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 위반시
- ⑩ 기타 학생신분을 망각한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

제11조(제적)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적에 처한다.

- ① 타인을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, 집단 폭행을 주도 또는 가담한 자

- ② 법원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
- ③ 학원외에서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하거나, 학생신분을 망각한 행위를 한 자
- ④ 학생회비 또는 공금을 유용·횡령한 자
- ⑤ 학력이 열등하여 수학의 의욕이 전혀 없다고 인정된 자
- ⑥ 정당한 사유 없이 4주 이상 결석한 자
- ⑦ 집단 행위로 수업을 방해한 자
- ⑧ 불온 인쇄물을 붙이거나 유포한 자
- ⑨ 불온 단체를 조직하거나 집회를 한 자
- ⑩ 대학 운영업무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자
- ⑪ 학사 및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방해하는 자
- ⑫ 교직원을 비방하거나 폭언 폭행한 자
- ⑬ 제10조의 각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반복한 자

제12조(징계절차) 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도교수의 의견을 들어 학생처장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상벌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.

1. 사건경위서
2. 징계 대상자 명단
3. 징계 사유 설명서
4. 징계 대상자 진술서

② 징계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제13조(자격제한) 징계 처벌을 받은 학생은 그 기간 중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1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